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식품의약품안전처	보도자료	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

보도일시	배포 즉시	배포일자	2021. 9. 16.(목)
담당과장	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오영진 (☎043-719-2252)	담당자	김수현 사무관 (☎043-719-2262)

나트륨·당류 저감제품 활성화를 위한 표시기준 개편

- 「나트륨·당류 저감표시 기준」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-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최근 소비자들이 '덜 단', '덜 짠' 식품을 찾는 소비자 니즈(needs)*에 맞춰 **저감표시 대상과 기준**을 정한 **「나트륨·당류 저감 표시기준」 제정안을 9월 16일 행정예고**합니다.

* '20년 소비자(2,040명) 인식조사결과, 응답자의 88%는 나트륨·당류 많은 식품 섭취나 구매 횟수를 줄일 의향이 있고, 응답자 90.1%는 나트륨·당류 저감된 제품 구매 의향 있음

○ 이번 고시는 식품제조업체가 나트륨·당류 함량이 낮은 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라면·가정간편식 등 국민 다소비 식품의 저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.

□ 주요 내용은 나트륨·당류 저감 표시를 하기 위한 대상과 기준입니다.

○ **(적용 대상)** 우선 국민 다소비 식품인 라면 등 **유탕면류*부터 적용하고,** 향후 **가정간편식**(국, 탕, 찌개) **등**으로 **점차 확대**할 계획입니다.

* ▲국물형(용기형, 봉지형): 국물을 함께 섭취하는 라면 ▲비국물형(용기형, 봉지형) : 비빔면, 볶음면 등

○ **(표시 기준)** 나트륨·당류 저감 표시 대상 제품군이 **❶시중 유통 중**인 제품의 **나트륨·당류 평균값*보다 10% 이상을 줄이거나 ❷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% 이상**을 **줄이면 '덜 단', '덜 짠', '나트륨 줄인'** 등의 표시가 가능해집니다.

* 제품의 세부 분류별 나트륨 평균값은 고시 시행 전 식품안전나라(www.foodsafetykorea.go.kr) 누리집에 게시(10월중)될 예정

- 참고로 기존에는 '덜짜다'라는 유형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**시장 점유율 상위 3개 제품의 나트륨 평균 함량보다 25%이상 줄여야** 했습니다.

□ 지금까지는 나트륨·당류 함량을 **상당 수준 줄였으나** 영양 강조 **표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** 나트륨·당류 **저감 표시를 할 수 없었습니다.**

○ 일부 제조업체는 감미료 등을 설탕 대체재로 사용하거나 나트륨 함량을 줄여도 상대적으로 맛의 변화가 적은 제품(된장, 고추장, 김치 등)을 대상으로 저감화 노력을 했으나 **영양강조 표시기준**이 **엄격**해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웠습니다.

○ 이에 미국, 캐나다, 중국 등 외국 사례*와 나트륨 저감 연구용역 결과** 등을 종합해 **'상위 3개사 제품'에서 '자사 유사제품'으로** 개선하고 **동일 식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 대비 10%이상 줄여도** 저감 표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

* 비교 대상 제품 : ▲(미국) 판매량 상위 3개사 제품 또는 자사 유사제품 ▲(캐나다) 유사 참조 식품(100g당) ▲(중국) 유사 참조 식품

** **(연구용역)** ▲기존 식품대비 10% 저감(유탕면 등 76개 식품유형별)하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 3,093mg 달성 가능 ▲대체제 사용 없이 맛에 큰 영향 없는 나트륨 저감 기준은 10% 수준 적정

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나트륨, 당류 섭취량 감소를 위해 소비자가 보다 쉽게 덜 달고, 덜 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○ 아울러 고시 시행 전 식음료 업체들이 올바르게 덜 달고, 덜 짠 제품 표시를 하도록 돕는 「나트륨·당류 저감 표시기준」 **가이드라인**을 배포해 **저감 표시 제도**가 **조기**에 **정착될 수 있도록** 노력하겠습니다.

- 이번 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(www.mfds.go.kr) → 법령·자료 → 제·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·훈령·예규 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붙임 **보도자료 관련 Q&A**

Q1) 「나트륨·당류 저감 표시기준」의 제정 목적은 무엇인지?

○ 2025년까지 우리국민의 하루 나트륨 평균 섭취량을 3,000mg(소금 7.5g)을 이하로 감소시키고, 나트륨·당류 함량을 줄인 다양한 제품의 출시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

* '19년 우리나라 국민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 3,289mg (국민건강영양조사)

Q2) 기존의 영양강조 표시기준과 새롭게 제정되는 「나트륨·당류 저감 표시기준」의 차이는 무엇인지?

구분	현행	개선
저감 표시 조건	동일한 유형의 제품 중 **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제품**과 **저감 표시 대상 제품**의 나트륨·당류 **함량 평균값**의 **차이가 최소 25% 이상**	① 시중 유통 중인 식품의 세부 분류별 나트륨·당류 함량의 평균값 대비 10% 이상 ② 자사 유사제품* 대비 25% 저감 시 * 같은 제조회사에서 생산한 동일식품유형 및 세부분류의 제품을 말함(수출용, 생산실적 無.제외)

Q3) 저감 표시 기준 중 '시중 유통 중인 동일 식품의 나트륨·당류 함량의 평균값 대비 10% 이상 감소'의 근거는?

○ 저감 제품개발 활성화를 위해 **연구용역 및 소비자·기업 의견수렴 반영**

○ **(연구결과)** ①기존 식품대비 10% 저감(즉석섭취식품, 유탕면 등 76개 식품유형별)하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 3,093mg 달성 가능, ②국민 수용성(대체제 사용 없이 맛에 큰 영향 없음)을 고려한 나트륨 저감 기준은 10% 수준이 적정

■ **(식약처 연구용역) 한국형 당·나트륨 저감화 모델(WHO-EU 소금감소 모델준용)에 따른 저감대상 식품, 식품별 감소해야할 나트륨 함량 목표, 편익분석 결과 제시**

■ **(나트륨 저감과 기호도 상관관계 연구) 나트륨 저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속가능성이 높고, 나트륨 함량은 15~20% 이상 저감되면 싱겁다고 느껴**

기호도(거부감)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

■ (식약처 연구용역) 일반 육개장과 저감 육개장 비교 실험시 10% 수준까지 기호도 차이 없음

Q4) 저감 표시 기준 중 '자사 유사식품 대비 25% 이상 감소'의 근거는?

○ 국제식품규격위원회(CODEX), 미국, 캐나다, 중국 등은 참고식품(자사 유사제품 등)과 비교해 나트륨 함량을 25% 이상 줄이면 저감 표시 허용

○ 이러한 국제기준 및 외국사례를 고려해 참고식품을 '상위 3개사 제품'에서 '자사유사제품'도 가능하도록 확대

Q5) 「나트륨·당류 저감 표시기준」의 적용 대상과 향후 품목 확대 계획은?

○ 이번 제정고시의 적용 대상은 라면 등 유탕면류이며, 단계적으로 대상 제품을 확대 예정

○ 올해 안으로 품목 적용을 확대를 위해 국, 탕, 찌개 등 가정간편식* 생산업체와 관련 내용을 협의 중

* 가정간편식은 식품공전 상 즉석섭취편의식품류(즉석섭취식품, 즉석조리식품, 신선편의식품, 간편조리식품)를 통칭

Q6) 저감 표시기준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무엇인지?

○ 현행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의 표시방법을 준용하며, 저감표시를 충족하면 '덜, 감소, 줄인'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제품에 표시 가능

* (예시) "본 라면은 (라면류 평균값 대비) 나트륨을 15% 줄인 덜 짠 라면입니다"

○ 해당 제품의 ①평균값* 대비 10%이상 또는 ②자사유사제품 대비 25% 이상 저감 기준을 충족하면 저감 표시가 가능하며, 제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 평균값*은 고시 제정 시행 전 식약처 식품안전나라(www.foodsafetykorea.go.kr) 누리집에 게시(10월 중)될 예정

* 국내 유통 중인 유탕면 제품의 나트륨 함량의 평균값